

2020학년도 유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대상	학급수	지원 대상	정원	모집인원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만3~5세 혼합연령반	1	2014. 1. 1. ~ 2016. 12. 31.	16명	10명

- ◇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8:30~16:40)
- ◇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름.
- ◇ 조기입학유아(2017.1.1.~2.28)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유치원에 문의 후 현장접수

2. 모집방법 및 모집일정

-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 ◇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함.
- ◇ 지원횟수는 보호자의 유치원 선택권에 따라 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기존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재학생은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 ◇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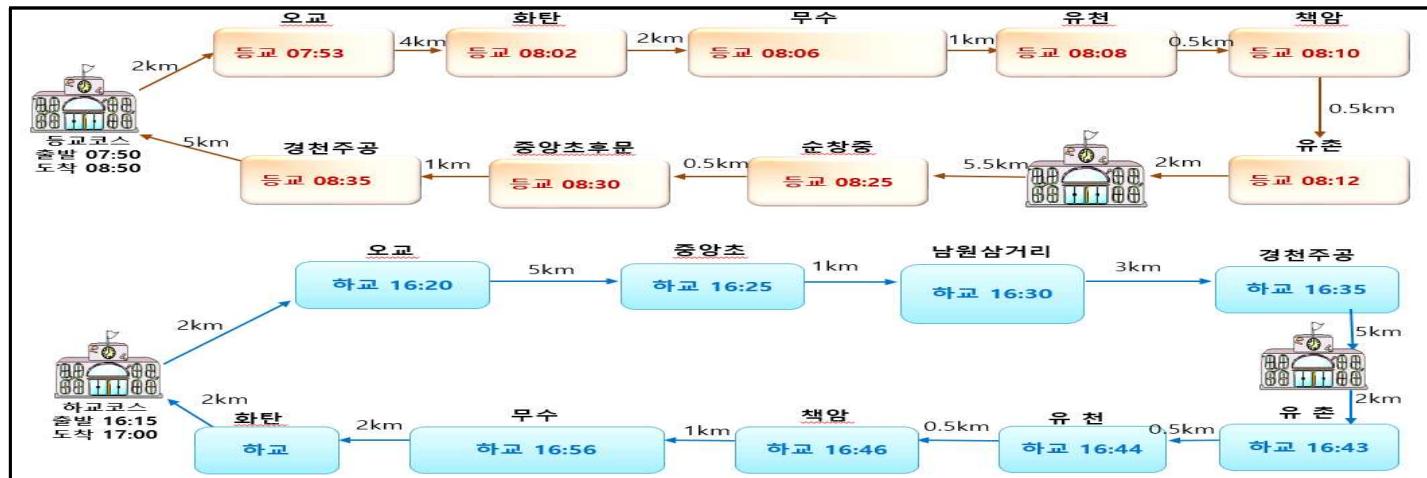
전형	절차	모집 일정	주요 내용
우선 모집	접 수	2019.11.05.(화)(09:00)~2019.11.07.(목)(18:00 마감) *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가능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12.(화)(15시)	추첨 결과 발표
	등록	2019.11.13.(수)(09:00)~2019.11.14.(목)(18:00 마감)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선발자 유치원 등록
일반 모집	접 수	2019.11.19.(화)(09:00)~2019.11.21.(목)(18:00 마감)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26.(화)(15시)	추첨 결과 발표
	등록	2019.11.27.(수)(09:00)~2019.11.29.(금)(18:00 마감)	선발자 유치원 등록
추가 모집	접 수	2019.12.02.(월)~2020.01.31.(금)	※ 정원 미달일 경우
	등록	2020.01.31.(목) (16:00 등록마감)	

3. 모집구분 및 우선순위(세부내용은 뒤 쪽에 붙임 1, 2 참조)

전형	우선순위	지원 대상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모집인원의 3%이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모집인원의 3%이상)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의 50%이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기타 5순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일반 모집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 ◇ 우선모집 자격 및 증빙서류는 <붙임 1>에 따름
-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4. 통학차량 노선 [※2019년 기준]



5. 교육비용 : 무상교육 <※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6.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 조기입학유아(2017.1.1.~2.28) ◇ 현장접수자는 9:00~16:3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추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은 접수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님.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쌍생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를 결정했다면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하면 됨.
합격자 유치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한 경우,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미등록시 자동으로 등록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모집 등록기간 : 2019.11.13.(수)(09:00)~2019.11.14.(목)(18:00 마감) * 일반모집 등록기간 : 2019.11.27.(수)(09:00)~2019.11.29.(금)(18:00 마감)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19.11.30.(토)(00:00)~2019.12.31.(화)(24:00) ◇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령 12월 16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8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단, 휴일은 3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12월 30일,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12월 31일 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063)653-4808(유치원), FAX 063)653-5324 * 이메일 : youdung4820@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yudeung.es.kr

2019. 10. 18.

유 등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우선모집 대상 범위

대상	자격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유치원으로 배치 결정 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재원 중인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함 	
법정저소득층 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p>※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u>손자까지</u>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저출산 대책 반영)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사)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우선모집 증명서류

우선입학대상	증빙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희망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각 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음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재원생의 형제·자매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등)
다자녀 가정(3명 이상)	증명서류(주민등록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장애인부모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